
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

2026. 6



고용노동부
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1

추진 배경

- 국내 이주노동자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,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빈번
 - 내국인 대비 높은 산재율,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조건 격차 大
 -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연속 발생 →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

2

문제점 및 원인

- (이주노동자의 취약성) 낮은 환경, 고용·체류 불안감 등으로 정부 기관 접근성 낮은 이주노동자 특성상 인권침해 적발·해결에 한계
 - 비자 연장 불이익 등 우려로 인권침해 발생 시에도 미신고하거나, 민간 인권단체 등 상담에 의존하는 경향
- ⇒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뒤늦게, 일부만 파악·해결
- (보호 사각지대) 부처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, 사업장 지도·감독이 고용허가제(E-9) 중심으로 실시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
- (사업주 인식 부족) 일부 문제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=값싼 노동력이라는 인식 등 낮은 노동인권意識으로 인권침해 발생
- ⇒ **취약사업장 및 인권침해 발생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하여 조치**

①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
- (익명조사신고) 익명조사 등 통해 인권침해 상시 점검 및 조기 파악
 - 인권침해 다수 발생 및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대상으로 **주기적 익명 설문조사** 실시하여 감독 연계
 - **기초노동질서 점검**(지방정부-지방관서 합동) 시, 자치단체 정보* 기반으로 취약사업장 선정 및 이주노동자 면담·익명 설문조사 참여 유도
 - * 권역별 협의회에서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·업종(가설건축물 숙소, 산업단지 등) 선정
 - 밀집지역 **기초자치단체와 협업**(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* 물량 위탁), 노무사 방문상담(산단·숙소 등) 및 익명 설문조사 참여 요청 병행
 - * 노무사가 사업장 방문, 기초점검(1회) + 후속점검(최대 2회) 통해 단계적으로 컨설팅
 - **E-9 사업장 지도점검**(매년 3,000개) 시 외국인노동자 대상 **익명 설문조사** 통해 법 위반 확인하고 감독 연계
 -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통한 온·오프라인 **익명신고 접수 창구** 신설
 - * 현재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중이나, 이주노동자의 접근성 낮아 특화 경로 마련
- (외국인 인권리더) 적응도 높은 이주노동자를 「**외국인 인권리더**」로 지정, 위협사례 파악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(신설)
 - * ('26년) 50명 규모 시범 운영 → ('27년) 200여명 규모로 확대 운영 추진
 - 「외국인 인권리더」, 국가별 커뮤니티,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정기적 **간담회 및 의사소통** 통해 취약사업장 및 문제상황 포착

② 선제적 감독 실시

- **(기획감독)** 인권침해 다수 발생 및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(화성, 인천, 안산 등) 대상으로 신속한 **기획 감독** 실시(5.5주~6월, 100여개소 대상)
 - * 현재 전국 150개소 **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 실시 중**(3.30~6.19)이나, 최근 인권침해 사건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**폭행, 괴롭힘 특화 기획감독 추가 실시**
- **(적시성 강화)** 익명조사, 외국인 인권리더 등 **사전 모니터링**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는 **즉시 점검·감독 연계**
 -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접수되거나 언론 등 통해 인지하는 경우 **즉시 현장조사** 착수
- **(관계기관 협력)** 지역별로 **지방노동관서-지방경찰청-출입국외국인 사무소** 간 핫라인 구축 등 **공조 강화**
 - 외국인근로자 폭행 등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·사후 정보 공유 뿐 아니라 사건 해결(검찰 송치 등)까지 **공동 대응**

③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

- **(전담팀 운영)** 지방노동관서 내 「**이주노동자 전담팀**」 신설(5.22.~)
 -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관서(안산, 경기, 인천북부 등 14개 관서)를 중심으로 전담팀 구성 →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감독·조사 대응 **총괄**
- **(보호조치)** 피해자 의사 반영하여 **인근 쉼터 연계** 등 통해 가해자와 분리조치, **신속한 사업장 변경** 지원 등 보호조치 병행
- **(신고 접근성 제고)**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'**신고·상담의 날**' 운영
 - * 신고·상담의 날: 공인노무사 등이 고용센터에 「출장신고센터」 운영, 다국어상담원과 연계한 상담·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

④ 사업주·관리자 등 현장 인식 개선

- (자율개선 지원) 취약사업장을 「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」 대상에 포함
 - 사업주가 사전 설문조사로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토록 유도하고, 소통·갈등관리·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 실시
 - * 취약사업장 선정(5.18) → 수행기관 계약(5월 말) → 총 630회 컨설팅 실시(~10월)
- (사업주 안내)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, 제재조치 및 방지 안내 등 권익보호 안내문 정기 발송(매분기, 팩스·문자 등)
 -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 협업하여 고용허가제 외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권익보호 안내문 제작·배포
- (사업주 교육)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핵심 기초노동법, 사업장 내 인권보호 교육 실시
- (캠페인)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·직장동료 인식 제고를 위해 민·관 공동캠페인 지속 전개(4.17 노동부-노동권익재단 MOU 체결)
 - * 이름 부르기 운동,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, 모국어 메뉴판·포크 제공 등

⑤ 인권침해 예방·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

- (사업장변경) 부당한 대우,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추진(E-9)
- (통합 지원)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, 근로조건 개선,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
 - 부처간 정보 연계 통한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감독 단계적 확대 등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행정 및 체류지원 강화